

【 3 】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제출연월일 : 2000. 1. 10.

제 출 자 : 양주군수

□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촉진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을 마련(안 제4조제1항)
- 나. 위탁사무에 대한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양주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
(안 제4조제3항)
- 다.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.(안 제4조제4항)
- 라.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(안 제6조)
- 마. 민간 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양주군사무의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를 두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함(안 제10조)
- 사.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에 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도록 함(안 제12조)
- 아.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함
(안 제14조)

양주군 조례 제 호

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민간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수탁기관”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군수는 법령이 성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와 책임을 제한하거나 군민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

-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군수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,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⑤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- 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- 제7조(심사위원회)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주군사무의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양주군의회의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“양주군각종위원회실비보상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며,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조각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0조(협약체결등)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.
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, 협약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지휘·감독)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 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- 제12조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사무의 종류 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(이의신청) ①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.

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

□ 제정이유

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을 촉진하고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가. 민간위탁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을 마련(안 제4조제1항)
- 나. 위탁사무에 대한 관계장관의 승인 또는 양주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
- 다.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음(안 제4조제4항)
- 라.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(안 제6조)
- 마.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「양주군사무의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」를 두도록 함(안 제7조)
- 바.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시 반드시 공증을 하도록 함(안 제10조)
- 사.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에대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도록 함(안 제12조)
- 아.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도록 함(안 제14조)

□ 제정조례(안) : 별첨

□ 신구조문대비표 : “해당없음”

□ 관계법령별체서 : “해당없음”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“해당없음”

□ 예산수반사항 : “해당없음”

□ 사전예고결과 : “해당없음”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(경기도 도정 12200-26, 1999. 1. 9호)
- 지방자치법 제95조(발췌)

第2章 地方自治

第1節 通 則

●地方自治法〔1988.8.4. 6 法律第4004號全文改正〕

改正 1989.12.30 法律第4162號
 1990.12.31 法律第4310號
 1991.5.23 法律第4367號
 1991.12.31 法律第4464號
 1994.3.16 法律第4741號
 1994.12.20 法律第4789號
 1995.1.5 法律第4877號
 1995.8.4 法律第4959號
 1995.12.29 法律第5069號(教育法)

第1章 總 約

第1節 總 則

第1條 (目的) 이 법은 地方自治團體의 종류와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와의 基本的 관계를 정함으로써 地方自治行政의 民主性과 能率性을 도모하며 地方의 균형적 발전과 大韓民國의 民主的 발전을 기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.

(全文改正 89.12.30)

第2條 (地方自治團體의 종류) ① 地方自治團體는 大別하여 다음의 2種으로 한다. <改正 94.12.20>

1. 特別市와 廣城市 및 道
2. 市와 郡 및 區

② 地方自治團體인 區(이하 “自治區”라 한다)는 特別市와 廣城市的 管轄區域안의 區에 한하여, 自治區의 自治權의 범위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·郡과 다르게 할 수 있다. <改正 94.12.20>

③ 第1項의 地方自治團體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別途의 特別地方自治團體를 設置할 수 있다.

④ 特別地方自治團體의 設置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第3條 (地方自治團體의 法人格 및 관할) ① 地方自治團體는 法人으로 한다.

② 特別市와 廣城市 및 道(이하 “市·道”라 한다)는 政府의 直轄下에 두고, 市는 道의 管轄區域안에, 郡은 廣城市 또는 道의 管轄區域안에 두며, 自治區는 特別市와 廣城市的 管轄區域안에 둔다. <改正 94.12.20>

③ 特別市 또는 廣城市가 아닌 人口 50萬이상의 市에는 自治區가 아닌 區를 둘 수 있고, 郡에는 邑·面을 두며, 市와 區(自治區를 포함한다)에는 洞을, 邑·面에는 里를 둔다. <改正 94.12.20>

(추 67)

置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地方自治團體의 長중에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務를 代行할者를 지정한다.

(全文改正 94·12·20)

第90條 (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辞任)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그 職을 辞任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地方議會의 議長에게 미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第90條의2 (地方自治團體의 長의 退職)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다음 命號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職에서 退職된다.

1.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겸임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한 때
2. 被選舉權이 없게 된 때
3. 第8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職을 상실한 때

(本條新設 94·3·16)

第91條 削除 <94·3·16>

第2款 權限

第92條 (地方自治團體의 統轄代表權)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를 代表하고, 그 事務를 統轄한다.

第93條 (國家事務의 委任) 市·道와 市·郡 및 自治區에서 施行하는 國家事務는 法令에 다른 規定이 없는 한 市·道知事와 市長·郡守 및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委任하여 행한다.

第94條 (事務의 管理 및 執行權)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와 法令에 의하여 그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된 事務를 管理하고 執行한다.

第95條 (事務의 委任등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,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. <改正 94·12·20>

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(事務所·出張所를 뜻한다)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. <改正 94·12·20>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中 調査·検査·檢定·管理業務등 住民의 權利·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·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. <改正 94·12·20>

(초 55)

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改正 94·12·20>

第96條 (職員에 대한 任免權等)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소속職員을 指揮·監督하고 法令과 條例·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任免·教育訓練·服務·懲戒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.

第97條 (事務引繼)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退職하는 때에는 그 소관事務의 일체를 後任者에게 引繼하여야 한다.

第3款 地方議會와의 관계

第98條 (地方議會의 議決에 대한 再議要求의 提訴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越權 또는 法令에 위반되거나 公益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블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. <改正 94·3·16>

②第1項의 요구에 대하여 再議의 결과 在籍議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議員 3分의 2이상의 賛成으로 前과 같은 議決을 하면 그 議決事項은 확정된다.

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議된 사항이 法令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法院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第159條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. <新設 94·3·16>

第99條 (豫算上 執行 불가능한 議決의 再議要求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의 議決이 豫算上 執行할 수 없는 經費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議決事項을 移送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이유를 블여 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. <改正 94·3·16>

②地方議會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를 削減하는 議決을 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.

1. 法令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에서義務的으로 부담하여야 할 經費
2. 非常災害로 인한 施設의 應急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經費

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는 第98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.

第100條 (地方自治團體의 長의 先決處分)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議會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(議員의 拘束등의 사유로 第56條의 規定에 의한 議決定足數에 미달하게 된 때를 말한다)와 地方議會의 議決事項중 住民의 生命과 財產保護를

(추 55)

문서번호	도정 12200-26
보존기간	10년
등록일자	'99. 1. 9

自治團體事務의
民間委託推進指針

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과감히 민간에 위탁
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·시장원리를 도입
하는 등 조직혁신을 기하기 위한 추진지침임



京畿道

< 참고2 >

○○사도(사·군·구)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○○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,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민간위탁"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"수탁기관"이라 함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4. 기타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
-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

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○○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자치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) ①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○○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"○○시각종위원회실비보상 조례"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수탁사무의 처리)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) ①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,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.
②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.

제10조(협약체결등) ①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.
②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액,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1조(지휘·감독) ①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.
②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2조(사무편람) ①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·처리기간·처리과정·처리기준·구비서류·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3조(이의신청) 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변명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은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재결을 하고,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(처리상황의 감사)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